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966호 2017. 4. 28.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규 칙

- 삼척시 규칙 제522호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 3
- 삼척시 규칙 제523호 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8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42호 삼척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공고 ----- 20
- 삼척시 고시 제43호 삼척 도시계획시설(중로1-18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비관리청)인가 고시 ----- 42
- 삼척시 고시 제44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 44
- 삼척시 고시 제4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45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335호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8
- 삼척시 공고 제336호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0
- 삼척시 공고 제337호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91
- 삼척시 공고 제338호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110
- 삼척시 공고 제339호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17
- 삼척시 공고 제341호 삼척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42
- 삼척시 공고 제345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48
- 삼척시 공고 제356호 삼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51
-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4호 도로의 지정·공고 ----- 160

공 람										
--------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2017년 제2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7. 04. 05.)에서 의결된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7년 4월 28일

삼척시 규칙 제522호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를 “이”로, “공무원을”을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회계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제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44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45조”를 “지방재정법 제45조”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50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의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 별지 제13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계획서”를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진단 중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로, “세출예산월별 분기별배정계획서”를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로, “장애계”를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세무·회계과장에게”를 “통합지출관, 세무과장에게 이”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91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과장 및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관”을 “통합지출관 주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연 1회”를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50조”를 “지방재정법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으로,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출원”을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재무관”을 “통합지출관, 재무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회계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법 제53조 제4항”을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결산서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한”을 “법 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10일”을 “다음연도 2월 10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 중 “영 제78조”를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분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06조에 따라 영수필 통지서”를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

수필통지서”로,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제3항 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을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영 제84조”를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본청 실·과장”을 “통합지출관, 본청 실·과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세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9조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출원은(일시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을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으로, “계좌입금”을 “계좌입금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시행령 제52조”로, “아니할”을 “아니 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5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4조”를 “시행령 제53조제2항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 2. 제48조에 의한 자금배정

제50조의4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을 “통합지출관”으로,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비 및 집합지급은”을 “경비는”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을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를 “선급금 지급에 관하여”로 한다.

제56조 중 “송금·집합”을 “계좌·현금”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을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55호서식의 통상지급명령”을 “별지 제55-1호서식의 현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72조 및 영 제91조”를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영 제 97조 제2호”를 “시행령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영 제27조”를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을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영 제104조제1항”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를 “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3조”를 “시행령 제49조”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2조 및 영 제103조”를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 “현금지급명령”으로, “통상지급명령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제110조 중 “송금지급 명령”을 “계좌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11조를 삭제한다.

제112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감독”을 “관리·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6조”를 “시행령 제50조”로, “이름”을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름”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로, “통한 구매의”를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단서 중 “행사 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를 “행사실비보상금 등을”로, “영수인에 대하여”를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로 한다.

제129조제2항 중 “회계연도, 회계명,”을 “동일회계 내”로 한다.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본청 회계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본청 회계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2조 중 “시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41조 중 “영 제108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로 한다.

제150조제1항 중 “법 제91조”를 “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9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로, “처리·관리한다”를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8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

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를 별지 부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5-1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5호서식>

과오납금계좌반환명령

○○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과 목			과 목			과 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총담	환부금	이자	총담	환부금	이자	총담
지급금액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행명			은행명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징수관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년 월 일		
관 할 북			징수관 직 성명 (인)			금 고		
			금고 귀하			징수관 귀하		

<별지 제55-1호서식>

(계좌현금) 지급명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재	지출원	금고
----	-----	----

(단위 : 원)

연번	지급명령번호	명령구분	입금유형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은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당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63-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탁서	납입통지서	영수증																																																														
<table border="1"> <tr><td colspan="2">세입세출외현금</td></tr> <tr><td>납부번호</td><td>20xx-xxxxxx-x xxxxxx</td></tr> <tr><td>금원(금원)</td><td></td></tr> <tr><td>정리구분</td><td></td></tr> <tr><td>건명</td><td></td></tr> <tr><td>현금</td><td></td></tr> <tr><td colspan="2">위와 같이 납부함.</td></tr> <tr><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 colspan="2">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td></tr> </table>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 xxxxxx	금원(금원)		정리구분		건명		현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table border="1"> <tr><td colspan="2">세입세출외현금</td></tr> <tr><td>납부번호</td><td>20xx-xxxxxx- xxxxxx</td></tr> <tr><td>금원(금원)</td><td></td></tr> <tr><td>정리구분</td><td></td></tr> <tr><td>건명</td><td></td></tr> <tr><td>현금</td><td></td></tr> <tr><td colspan="2">납부자주소</td></tr> <tr><td colspan="2">성명</td></tr> <tr><td colspan="2">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td></tr> <tr><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 colspan="2">금고</td></tr> </table>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 xxxxxx	금원(금원)		정리구분		건명		현금		납부자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table border="1"> <tr><td colspan="2">세입세출외현금</td></tr> <tr><td>납부번호</td><td>20xx-xxxxxx -xxxxxx</td></tr> <tr><td>금원(금원)</td><td></td></tr> <tr><td>정리구분</td><td></td></tr> <tr><td>건명</td><td></td></tr> <tr><td>현금</td><td></td></tr> <tr><td colspan="2">위와 같이 영수함.</td></tr> <tr><td colspan="2">년 월 일</td></tr> <tr><td colspan="2">납부자</td></tr> <tr><td colspan="2">인</td></tr> <tr><td colspan="2">금고</td></tr> </table>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 -xxxxxx	금원(금원)		정리구분		건명		현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 xxxxxx																																																															
금원(금원)																																																																
정리구분																																																																
건명																																																																
현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 xxxxxx																																																															
금원(금원)																																																																
정리구분																																																																
건명																																																																
현금																																																																
납부자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 -xxxxxx																																																															
금원(금원)																																																																
정리구분																																																																
건명																																																																
현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금고																																																																
<table border="1"> <tr><td colspan="2">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td></tr> <tr><td>xx은행</td><td>xxxx-xx-xxxx xxxxxx</td></tr> <tr><td colspan="2">금고 귀하</td></tr> </table>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 xxxxxx	금고 귀하		<table border="1"> <tr><td colspan="2">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td></tr> <tr><td>xx은행</td><td>xxxx-xx-xxxx xxxxxx</td></tr> <tr><td colspan="2">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td></tr> </table>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 xxxxxx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table border="1"> <tr><td colspan="2">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td></tr> <tr><td>xx은행</td><td>xxxx-xx-xx xxxxxx</td></tr> <tr><td colspan="2">납부자 귀하</td></tr> </table>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 xxxxxx	납부자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 xxxxxx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 xxxxxx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 xxxxxx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제2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7. 04. 05.)에서 의결된 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7년 4월 28일

삼척시 규칙 제523호

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 제4항”을 “법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와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소매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장소에는 소매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층수를 달리하여 2개소 이상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된 모든 소매인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17- 42호

삼척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규정에 따라「삼척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 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삼척시장

1. **공고목적** : 삼척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내용 일반인 열람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주요내용**
 - 가. 계획범위 : 1,185km(삼척시 행정구역 전역)
 - 나. 주요내용
 - 풍수해 관련 일반 현황
 -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 풍수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 풍수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등
3. **관계도서는 게재 생략하며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2017. 4. 21 ~ 2017. 5. 31
5. **열람장소** : 삼척시 안전총괄과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안전총괄과 (☎033-570-388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삼척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주요 현황 1부.

나. 위험지구단위 지정대례

구별	지구명	위 치	지 금 대 례	사상비 (백만원)	투자 우선순위	시정기간 (년)	시정구분		현행부지	비고
							사업시행	유지관리		
위험 지역	상곡리	비포면 상곡노리 101-13	•축제: 우연(No.71+100-80+50) L=600m •교량 제가설: 1개소	2,151	6	2	상곡시 (건설과)	상곡시 (건설과)	국민안전처 (소화선 정비)	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장원(500.5500 I)REG.1.00
조비	희노동 41	•축제: 좌연(No.1+00-10+34) L=784 m. 우연(No.49+00-127+00) L=7,800 m •교량 제가설: 3개소	38,172	14	6	상곡시 (건설과)	상곡시 (건설과)	국민안전처 (소화선 정비)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동봉	동봉동 124-1	•축제: 좌연(No.1+00-67+00) L=403m. •교량 제가설: 4개소	1,124	18	2	상곡시 (건설과)	상곡시 (건설과)	국민안전처 (소화선 정비)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서리문	북산동 20-3	•축제: 좌연(No.1+00-67+00) L=307m. 우연(No.39+00-46+00) L=600m •교량 제가설: 5개소	1,900	24	2	상곡시 (건설과)	상곡시 (건설과)	국민안전처 (소화선 정비)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학구	도계읍 고사리 141-6	•축제: 좌연(No.1+00-67+00) L=250m •교량 제가설: 4개소	868	23	1	상곡시 (건설과)	상곡시 (건설과)	국민안전처 (소화선 정비)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황초	도계읍 황초리 154	•축제: 좌연(No.13+00-24+35) L=385m •교량 제가설: 4개소	1,999	19	2	상곡시 (건설과)	상곡시 (건설과)	국민안전처 (소화선 정비)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 현행부지: 2015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원국민안전처, 2015. 7. 10), III.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7조 참조

구별	지구명	위 치	지 금 대 례	사상비 (백만원)	투자 우선순위	시정기간 (년)	시정구분		현행부지	비고
							사업시행	유지관리		
위험 지역	가부	원덕읍 노곡리 219	•축제: 우연(No.2+05+43) L=40m. 좌연(No.2+05+127+25) L=520m •교량 제가설: 1개소	2,244	17	3	상곡시 (건설과)	상곡시 (건설과)	국민안전처 (소화선 정비)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상행관	파주면 상곡리 269-9	•축제: 우연(No.0+00+23+20) L=1,170m. 좌연(No.12+30+16+20) L=190m •교량 제가설: 1개소	3,783	11	3	상곡시 (건설과)	상곡시 (건설과)	국민안전처 (소화선 정비)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황반불	신기면 고부동리 109-1	•축제: 좌연(No.1+00+4+20) L=225m. 우연(No.6+25+30+25) L=200m •교량 제가설: 2개소	1,085	19	2	상곡시 (건설과)	상곡시 (건설과)	국민안전처 (소화선 정비)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상행	근덕면 상행동리 38-2	•축제: 우연(No.29+00+77+35, No.48+10+53+20) L=1,126m •교량 제가설: 5개소	3,054	7	3	상곡시 (건설과)	상곡시 (건설과)	국민안전처 (소화선 정비)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유선	교동 413	•제가설: BOX 1.0m×1.0m, L=132m. BOX 1.2m×1.0m, L=170m. D 1,000mm, L=140m	942	8	1	상곡시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 (상수관로 정비)	상곡시 (상하수도사업소)	국민안전처 (소화선 정비)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사면 대책	도계읍 황초리 152	•면적: A=1,124㎡	154	45	1	상곡시 (건설과)	상곡시 (건설과)	국민안전처 (소화선 정비) 및 교도 정비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조비(비상근로지역) (가구·제비 민방)

※ 현행부지: 2015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원국민안전처, 2015. 7. 10), III.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7조 참조

차별 유형	지구명	위 치	지 갈 대 록	사업비 (백만원)	투자 우선순위에	사업기간 (년)	시행주체		관련부서	비고
							사업시행	유지관리		
시원 제법	도계1	도계읍 도계리 신150-1	· 식육용축 A=400㎡, 산마루육구 L=400m	313	32	1	민간	민간	삼척시 (안전총괄과)	사육제
	상리	도계읍 상리리 신113	· 용역 L=60m, 배수조형비 L=120m	200	39	1	민간	민간	삼척시 (안전총괄과)	사육제
	불라	도계읍 불라리 306	· 식육용축 A=100㎡, 산마루육구 L=50m	63	37	1	삼척시 (안전총괄과)	삼척시 (안전총괄과)	삼척시 (안전총괄과)	소규모 시외도로 우선시행
	산기	도계읍 산기리 59	· 배수조형비 L=30m, 토석류제어용 제방용 A=100㎡	54	44	1	민간	민간	삼척시 (안전총괄과)	사육제
	관우1	도계읍 관우리 신50-6	· 기호우구 11톤, 방범보통 A=20,000㎡	3,300	1	2	삼척시 (안전총괄과)	삼척시 (안전총괄과)	국민안전과 (재난·위생·방위·경비)	차량제대시설 개선지구 (관공리구)
	황포은	도계읍 황포리 신150-2	· 기호우설 낙차방기방 A=1,500㎡, 낙차방기용타미 L=30m	364	42	1	삼척시 (건설과)	삼척시 (건설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부	관공리구 부곡리합계지구 (관공리구)

* 관련부서: 2015년도 차원제안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국민안전과, 2015. 7. 10), III. 재난구조 및 재난구급을 담당기관에 관한 규정 제41조 참조

차별 유형	지구명	위 치	지 갈 대 록	사업비 (백만원)	투자 우선순위에	사업기간 (년)	시행주체		관련부서	비고
							사업시행	유지관리		
시원 제법	도계	도계읍 도계리 306-5	· 기호우구 5톤, 차원수제대시설, 용역 L=180m	3,600	2	2	삼척시 (안전총괄과)	삼척시 (안전총괄과)	국민안전과 (재난·위생·방위·경비)	차원제대시설 개선지구 (도계합계지구)
사육1	원대읍 원대리 신100-1	· 제비용축 A=191㎡		205	48	1	삼척시 (건설과)	삼척시 (건설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부	관공리구 부곡리합계지구 (관공리구)
산광	원대읍 산광리 1002	· 기호설 낙차방기방 A=200㎡, 낙차방기용타미 L=140m, 낙차방기 용타미 L=140m		219	28	1	삼척시 (안전총괄과)	삼척시 (안전총괄과)	국민안전과 (재난·위생·방위·경비)	관공리구 부곡리합계지구 (관공리구)
황포1	관덕면 황포리 1	· L구간: 기호설낙차방기방 A=1,760㎡, 낙차방기용타미 L=40m · M구간: 기호설낙차방기방 A=1,000㎡ · S구간: 기호설낙차방기방 A=1,780㎡		1,650	4	1	삼척시 (안전총괄과)	삼척시 (안전총괄과)	국민안전과 (재난·위생·방위·경비)	차원제대시설 개선지구 (황포지구)
덕진3	관덕면 덕진리 신10-3	· 기호설 낙차방기방 A=1,574㎡, 낙차방기용타미 L=50m		625	36	1	삼척시 (안전총괄과)	삼척시 (안전총괄과)	국민안전과 (재난·위생·방위·경비)	관공리구 부곡리합계지구 (관공리구)
덕진4	관덕면 덕진리 신5	· 기호설 낙차방기방 A=2,000㎡, 낙차방기용타미 L=100m		707	27	1	삼척시 (안전총괄과)	삼척시 (안전총괄과)	국민안전과 (재난·위생·방위·경비)	관공리구 부곡리합계지구 (관공리구)

* 관련부서: 2015년도 차원제안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국민안전과, 2015. 7. 10), III. 재난구조 및 재난구급을 담당기관에 관한 규정 제41조 참조

계획 유형	지구명	위 치	면적	지 대 배	시업비 (백만원)	투자 우선순위	사업기간 (년)	사업구분		비고	
								사업시행	유지관리		
사업 계획	경상2	경상동 255-1	1,043	· 가옥이촌 부흥 소경비밀림 190경, 식용기원재화부후 A=1,810㎡, 폐수처리장 및 부지관리 시설	2,289	10	2	상척시 (인원추진과)	상척시 (인원추진과)	국민안전의 (해안관리과) 중대	경상사제 봉곡마을지구 (경곡마을지구)
	경상5	경상동 255-1	1,043	· 1구간: 거대기원재정동부 A=1,067㎡, 이스렛키 50경, 폐수처리장 및 부지관리 시설 · 2구간: 마철로 325경, 낙시방죽마을지구 L=80m	1,043	9	1	상척시 (인원추진과)	상척시 (인원추진과)	국민안전의 (해안관리과) 중대	경상사제 봉곡마을지구 (경곡마을지구)
도시 계획	경상8	경상동 203	532	· 가옥이촌 부흥, 사명동 1개소, 도후로 L<30m	532	12	1	상척시 (인원추진과)	상척시 (인원추진과)	국민안전의 (해안관리과) 중대	경상사제 봉곡마을지구 (경곡마을지구)
	신용동상	신덕면 풍우리 1003	137	· 리포리도 사명동 삼척(1개소): 상광 12m, 길고 3m	137	95	1	상척시 (신원추진과)	상척시 (신원추진과)	신원정 (사명사업)	
시군권	행덕읍 사명리 804	행덕읍 사명리 804	240	· 비드리스 사명동 삼척(1개소): 상광 14m, 길고 4m	240	21	1	상척시 (신원추진과)	상척시 (신원추진과)	신원정 (사명사업)	
	관안면 신안리 515-1 일원	관안면 신안리 515-1 일원	155	· 비드리스 사명동 삼척(1개소): 상광 12m, 길고 3m	155	29	1	상척시 (신원추진과)	상척시 (신원추진과)	신원정 (사명사업)	

※ 관안부서: 2015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원(국민안전처시, 2015. 7. 10), Ⅲ. 재난구조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해당 항목

- 9 -

계획 유형	지구명	위 치	면적	지 대 배	시업비 (백만원)	투자 우선순위	사업기간 (년)	사업구분		관안부서	비고
								사업시행	유지관리		
도시 계획	상동권	상동면 대거리 170	118	· 비드리스 사명동 삼척(1개소): 상광 9m, 길고 3m	118	38	1	상척시 (신원추진과)	상척시 (신원추진과)	신원정 (사명사업)	
	상동권	상동면 고부동리 3161	155	· 비드리스 사명동 삼척(1개소): 상광 12m, 길고 3m	155	34	1	상척시 (신원추진과)	상척시 (신원추진과)	신원정 (사명사업)	
예산 계획	중간	중리동 207-27	-	· 봉매지역(해양수신동)은 동해당 3단계 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해당지역을 사업하는 계획(동해당 3단계 해양수리항상 조사업역, 2017년-2021년)을 수립 중으로 추후 본 봉매지역(중리동)의 변경 및 계획 시 직접계획을 반영하도록 위원회로 신청하였으며, 금회 직접계획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신청에는 제외	-	-	-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인안보관리과)	동해(남해)개발사업(2015. 해양수산부)
	일출	권진동 14	-	· 봉매지역(해양수신동)은 동해당 3단계 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해당지역을 사업하는 계획(중리동 3단계 해양수리항상 조사업역, 2017년-2021년)을 수립 중으로 추후 본 봉매지역(중리동)의 변경 및 계획 시 직접계획을 반영하도록 위원회로 신청하였으며, 금회 직접계획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신청에는 제외	-	-	-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인안보관리과)	동해(남해)개발사업(2015. 해양수산부)
상업용	관덕면 상동리 495-12	관덕면 상동리 495-12	-	· 원시마을 및 괴리마을소 임지를 고려하여 2015년 영안동(관덕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직접계획(토스파) 및 계획(영안소) 신청사업, 2015년-2020년(이) 수립 중으로 추후 본 봉매지역(상동리)의 변경 및 계획 시 직접계획을 반영하도록 위원회로 신청하였으며, 금회 직접계획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신청에는 제외	-	-	-	상척시 (해양수산과)	상척시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부 (인안보관리과)	영안(남해)개발사업(2015. 해양수산부)
	하계갈	관덕면 하계갈리 221-66	-	· 지정되어 직접계획(토스파) 상계 계획(영안소) 신청사업, 2015년-2020년(이) 수립 중으로 추후 본 봉매지역(상동리)의 변경 및 계획 시 직접계획을 반영하도록 위원회로 신청하였으며, 금회 직접계획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신청에는 제외	-	-	-	상척시 (해양수산과)	상척시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부 (인안보관리과)	영안(남해)개발사업(2015. 해양수산부)

※ 관안부서: 2015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원(국민안전처시, 2015. 7. 10), Ⅲ. 재난구조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해당 항목

- 10 -

계획 유형	지구명	위 치	의 의	의 의 내 용	사 업 비 (백만원)	부 과 유 선 단 위	사 업 기 간 (년)	시행구체		비고
								사업시행	유지관리	
예산 계획	개발	근덕면, 회양면리 221-19	· 임시철거 및 복귀유턴소 임지를 고려하여 2015년 연안정식면허구역으로 지정되어 비승계(보노노)에 갈의 복귀유턴소 건설사업, 2015년-2020년에 수립 중으로 추후 본 공구에서유턴유턴의 민영 및 재수입 시 의결제출을 반영하도록 유턴구역으로 신청하였으며, 유회 직전내에 수립 및 무리유턴소와 신청여지는 제외	-	-	-	-	상척시 (해양수업과)	상척시 (해양수업과)	해양수업과 (연안보존사업) (2015, 해양수산부)
								상척시 (해양수업과)	상척시 (해양수업과)	제2차 연안정비 (연경) 기본계획 (2010-2019)
일반	개발	근덕면 대원리 82-3	· 연안정식 모니터링 계획 수립	300	31	3	상척시 (해양수업과)	상척시 (해양수업과)	해양수업과 (연안보존사업) (2010-2019)	
							상척시 (해양수업과)	상척시 (해양수업과)	제2차 연안정비 (연경) 기본계획 (2010-2019)	
일반	개발	근덕면 조곡리 408-13	· 연안정식 모니터링 계획 수립	300	15	3	상척시 (해양수업과)	상척시 (해양수업과)	해양수업과 (연안보존사업) (2010-2019)	
							상척시 (해양수업과)	상척시 (해양수업과)	제2차 연안정비 (연경) 기본계획 (2010-2019)	
일반	개발	상척읍 월곡리 150-28	· 민간유치 모니터링 계획 수립	16,300	33	6	상척시 (해양수업과)	상척시 (해양수업과)	해양수업과 (연안보존사업) (2010-2019)	
							상척시 (해양수업과)	상척시 (해양수업과)	제2차 연안정비 (연경) 기본계획 (2010-2019)	
일반	개발	상척읍 월곡리 150-28	· 민간유치 모니터링 계획 수립	300	30	3	상척시 (해양수업과)	상척시 (해양수업과)	해양수업과 (연안보존사업) (2010-2019)	
							상척시 (해양수업과)	상척시 (해양수업과)	제2차 연안정비 (연경) 기본계획 (2010-2019)	

보관일자: 2015년도 자연유산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계획(연안정식, 2015. 7. 10), III-해안구조 및 해안부여부 복구사업, 등에 관한 계획 예산 자료

□ 연차별 시행계획
다. 권지역단위 저감대책

구 분	커칭내역	사업비 (백만원)	단 계	시행기간 (년)	연차별 사업계획(년)															
					단기															
					1	2	3	4	5	6	7	8	9	10						
비구조적 저감대책	· 제1차연안보존계획 구축 종합계획수립	538	단기	1-4년차	135	134	134													
	· 재해피도 대응 및 활용(해안방수·매상도 포함)	400	단기	1-3년차	200	200														
	· 유턴지역내 복귀수입 및 재수입	7,230	단기, 중기, 장기 지속적 시행	1-10년차	772	772	772	772	772	772	772	772	772	772	772	772	772	772	772	772
	· 풍우해 보행 점검회 및 방재요원 홍보강화	200	단기, 중기, 장기 지속적 시행	1-10년차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 해안내해 방제대책 수립	220	단기, 중기, 장기 지속적 시행	1-10년차	12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 유턴면 운영계획 개선대책 활용	-	단기, 중기, 장기 지속적 시행	1-10년차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추진단 및 유턴사업 추진단의 계획	-	단기, 중기, 장기 지속적 시행	1-10년차	-	-	-	-	-	-	-	-	-	-	-	-	-	-	-	-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강화	-	단기, 중기, 장기 지속적 시행	1-10년차	-	-	-	-	-	-	-	-	-	-	-	-	-	-	-	-
	· 풍우내란의 확산	-	단기, 중기, 장기 지속적 시행	1-10년차	-	-	-	-	-	-	-	-	-	-	-	-	-	-	-	-
	· 풍우내란지역 우수저감	-	단기, 중기, 장기 지속적 시행	1-10년차	-	-	-	-	-	-	-	-	-	-	-	-	-	-	-	-
· 마을내해방제대책	-	단기, 중기, 장기 지속적 시행	1-10년차	-	-	-	-	-	-	-	-	-	-	-	-	-	-	-	-	
· 재해유역별 유거관리대책	9,078	계	계				4,266					2,406							2,406	

구분	세대내용 지구명	비담대적	단위	유치기간 순회	사업기간	사업계획(년)							사업방법	사업비(백만원)			관련부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계
위협지구 단위	도계	• 가동지구 2호동, 지하주차대설치, 용벽 L=180m	단위 1~2학년	2	2									3,600	1,800	360	1,440	국민안전처 (예해) 위생사업 (도제외지구)	국민안전처 (예해) 위생사업 (도제외지구)
	경동5	• 1구간: 기능기타방치방 A=1,500㎡, 낙석방지용벽 L=50m • 2구간: 기능기타방치방 A=1,000㎡ • 3구간: 기능기타방치방 A=1,700㎡	단위 2학년	4	1									1,650	625	105	690	국민안전처 (예해) 위생사업 (공포지구)	국민안전처 (예해) 위생사업 (공포지구)
	경동5	• 가동지구 1호동, 거대기타방치방 A=1,120㎡, 에스컬레이터 50장	단위 2~4학년	5	3									4,450	2,200	440	1,790	국민안전처 (예해) 위생사업 (나말호지구)	국민안전처 (예해) 위생사업 (나말호지구)
	경동5	• 1구간: 가동지구 1호동, 벽면도 450㎡, 낙석방지용벽 L=130m • 2구간: 낙석방지용벽 L=100m, 낙석방지용벽 L=100m	단위 2학년	8	1									397	199	40	158	국민안전처 (예해) 위생사업 (경동지구)	국민안전처 (예해) 위생사업 (경동지구)
	경동5	• 1구간: 기타기타방치방 A=1,087㎡, 에스컬레이터 50장, 계층기상설 및 유괴방지 1식 • 2구간: 약물도 320㎡, 낙석방지용벽 L=80m	단위 2학년	9	1									1,043	522	104	417	국민안전처 (예해) 위생사업 (경동지구)	국민안전처 (예해) 위생사업 (경동지구)
	경동5	• 가동지구 4호동, 소양대입실 150㎡, 식생기타방치방 A=1810㎡, 계층기상설 및 유괴방지 1식	단위 2~3학년	10	2									2,389	1,195	239	955	국민안전처 (예해) 위생사업 (경동지구)	국민안전처 (예해) 위생사업 (경동지구)

용시업비: 본과비율(국비)에 따라비, 구분: 보조선, 용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항(보조선) 기준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선)
 국토의 시비 구분: 상층: 일반지역, 중층: 일반지역

구분	세대내용 지구명	비담대적	단위	유치기간 순회	사업기간	사업계획(년)							사업방법	사업비(백만원)			관련부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계
위협지구 단위	경동5	• 가동지구 2호동, 시방문 1호동, 도수도 L=50m	총기 5학년	12	1									532	266	53	213	국민안전처 (예해) 위생사업 (경동지구)	국민안전처 (예해) 위생사업 (경동지구)
	경동5	• 가동지구 4호동, 용벽용벽 L=10m, 계층기상설 A=280㎡, 에스컬레이터 15장	총기 5학년	16	1									612	306	61	245	국민안전처 (예해) 위생사업 (경동지구)	국민안전처 (예해) 위생사업 (경동지구)
	식계5	• 기타기타방치방 A=933㎡, 에스컬레이터 28장	총기 6학년	20	1									645	323	64	258	행정자치부 (공민안전) (예해) 위생사업 (도제외지구)	행정자치부 (공민안전) (예해) 위생사업 (도제외지구)
	경동5	• 계층기상설 A=400㎡, 배수장벽 L=100m	총기 6학년	22	1									180	90	18	72	국민안전처 (예해) 위생사업 (경동지구)	국민안전처 (예해) 위생사업 (경동지구)
	식계5	• 기타기타방치방 A=2,200㎡, 에스컬레이터 425장	총기 6~7학년	16	2									2,431	1,216	243	972	행정자치부 (공민안전) (예해) 위생사업 (도제외지구)	행정자치부 (공민안전) (예해) 위생사업 (도제외지구)
	덕진1	• 기능기타방치방 A=2,000㎡, 낙석방지용벽 L=100m	총기 7학년	27	1									1,028	509	102	409	국민안전처 (예해) 위생사업 (경동지구)	국민안전처 (예해) 위생사업 (경동지구)

용시업비: 본과비율(국비)에 따라비, 구분: 보조선, 용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항(보조선) 기준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선)
 국토의 시비 구분: 상층: 일반지역, 중층: 일반지역

구분	내역	사업기간	사업계획(년)			사업방법	사업비(백만원)			비고												
			연도	연도	연도		계	국비	도비		시비											
구분	내역	사업기간	연도	연도	연도	사업방법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 사업비 분담비율(간주)에 따라, 구분:보조금:과외에 대한 비율:시행방:제4호:1(비보조금:저금:대상:사업의:범위와:기준:보조금)

구분	내역	사업기간	사업계획(년)			사업방법	사업비(백만원)			비고											
			연도	연도	연도		계	국비	도비		시비										
구분	내역	사업기간	연도	연도	연도	사업방법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 사업비 분담비율(간주)에 따라, 구분:보조금:과외에 대한 비율:시행방:제4호:1(비보조금:저금:대상:사업의:범위와:기준:보조금)

구분	해당구별 지구명	지역	면적	사업기간	사업계획(년)			시행방법	사업비(백만원)				비고
					연간	중기	장기		계	국비	도비	시비	
특별지구	해안특별지구	삼척시	20,000	2017.01.01 ~ 2020.12.31	-	-	-	연간보유사업	-	-	-	-	특별지구특별지구(2015.01.01 ~ 2015.12.31) 폐업(수입부)
일반지구	삼척시	삼척시	20,000	2017.01.01 ~ 2020.12.31	-	-	-	연간보유사업	-	-	-	-	일반지구일반지구(2015.01.01 ~ 2015.12.31) 폐업(수입부)
일반지구	삼척시	삼척시	20,000	2017.01.01 ~ 2020.12.31	-	-	-	연간보유사업	-	-	-	-	일반지구일반지구(2015.01.01 ~ 2015.12.31) 폐업(수입부)
일반지구	삼척시	삼척시	20,000	2017.01.01 ~ 2020.12.31	-	-	-	연간보유사업	-	-	-	-	일반지구일반지구(2015.01.01 ~ 2015.12.31) 폐업(수입부)
일반지구	삼척시	삼척시	20,000	2017.01.01 ~ 2020.12.31	-	-	-	연간보유사업	-	-	-	-	일반지구일반지구(2015.01.01 ~ 2015.12.31) 폐업(수입부)
일반지구	삼척시	삼척시	20,000	2017.01.01 ~ 2020.12.31	-	-	-	연간보유사업	-	-	-	-	일반지구일반지구(2015.01.01 ~ 2015.12.31) 폐업(수입부)

본 사업의 실행계획(지역별 구분)은 본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 1항(보통은 처음 내용 사업의 범위와 기본모듈)을
 참조한 지역 구분: 삼척시 일반지역

삼척시 고시 제2017-43호

삼척 도시계획시설(중로1-18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비관리청)인가 고시

1. 삼척시고시 제1995-1호(1995.1.20.)로 최초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삼척시고시 제2013-169호로 최종 결정 고시된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8호선)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중로1-18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삼척시청 도시과(033-570-38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28일

삼척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삼척시 교동 735-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8호선) 사업
나. 명 칭: 삼척 교동 중로1-18호선 일부구간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결정폭원(m)	연장(m)	기시행(m)	금회시행(m)	향후시행(m)	비고
중로1-18호	20.0	727.0	B=12.0m, L=727m B=20.0m, L=100m	B=12.0m~20.0m L=200.0m	B=12.0m~20.0m L=367.0m	무상귀속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박성표
나. 주 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517(삼성동, 아셈타워 25층)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에정일: 실시계획 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2018. 3.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

면적	소제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원입 면적 (㎡)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교동	726	- 4	도	6,854	2,676	국(건설부)	-	-
2	교동	209	- 2	원	519	519	국(국토교통부)	-	-
3	교동	210	- 2	도	132	132	국(국토교통부)	-	-
4	교동	235	- 8	도	142	30	국(건설부)	-	-
5	교동	727	-	도	2,318	12	국(건설부)	-	-
6	교동	211	- 3	도	186	186	국(기획재정부)	-	-
7	교동	212	- 2	도	1,560	103	국(건설부)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권입 면적 (㎡)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관계	
8	교동	삼143 - 4	도	22	15	대한토지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5	소유권	
9	교동	삼143 - 3	임	136	136	대한토지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5	소유권	
10	교동	729 - 10	권	80	80	국(기획재정부)	-	-	
11	교동	234 - 1	도	60	60	국(기획재정부)	-	-	
12	교동	209 - 3	도	1,287	1,287	국(건설부)	-	-	
13	교동	209 - 11	권	1	1	대한토지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5	소유권	
14	교동	729	권	1,811	5	국(건설부)	-	-	
15	교동	234 - 4	도	46	19	국(기획재정부)	-	-	
계				15,134	5,234				

나. 지상물권조사 : 해당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가. 무상 귀속할 공공시설 : 도로 1개 노선

나. 도로조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비고
등급	유형	번호	복원							
종로	1	18	20	국지도로	262m	교동 234-4	교동 삼143-4도	일반도로	-	A=5,234㎡

8. 법 제92조에 따른 관린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

법률명	인·허가사항	비고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협의번호: 협의 2016-35호(2016.6.2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잠-사용허가	허가번호: 공유수면 제2016-104호(2016.6.24.)
도로법	도로정용(일시)허가	허가번호: 2016-147호(2016.11.21.)

삼척시 고시 제2017-44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삼척시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4. 26.
삼척시장

(단위 : 천원)

회계별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률
합	계	557,487,557	458,086,552	99,401,005	21.7%
일반회계		507,077,892	416,175,926	90,901,966	21.8%
특별회계		50,409,665	41,910,626	8,499,039	20.3%
상수도사업		20,120,649	13,001,821	7,118,828	54.8%
하수도사업		4,989,858	4,345,508	644,350	14.8%
주택사업		50,000	50,000	0	0.0%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18,538,370	18,509,800	28,570	0.2%
천연가스생산기지		500,000	500,000	0	0.0%
의료보호기금운영		1,610,651	1,582,651	28,000	1.8%
자활기금		1,390,376	1,389,326	1,050	0.1%
농공지구조성사업		708,241	103,000	605,241	587.6%
주차장사업		402,020	322,020	80,000	24.8%
임대아파트관리운영		2,099,500	2,106,500	△7,000	△0.3%

삼척시 고시 제2017 - 4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 04. 28.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104-66 (성남동) 외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4.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
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자원동 124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179-190 (자원동)	20170428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오십천) 명칭활용	
2	강원도 삼척시 성남동 115-3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104-66 (성남동)	20170428	건물신축	20090626	엑스포명칭활용 (성남엑스포개최 지일원)	
3		이	하	여	백		
4							
5							
6							
7							
8							
9							
10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중권주소		도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중권주소	도로명주소					
		계	2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자원동 124	강원도 삼척시 오심천로 179-190 (자원동)	20170428	건축신축	20090626	지황지몰(오심천)명칭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성남동 115-3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104-66 (성남동)	20170428	건축신축	20090626	엑스포명칭활용(성남엑스포 개표지일됨)	